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기획재정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(5급 2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1. 11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,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1. 29. ~ 12. 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의2제3항 중 “제9호 및 제12호부터”를 “제9호, 제12호부터 제17호, 제17호의2부터 제17호의 3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·추진
및 평가 등 총괄

12.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·추진 및 데이터
관리 등 총괄

별표 1 중 총계 “1,070”을 “1,072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060”을 “1,062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·전산사무관·시설사무관·농업사무관·환경사무관·공업사무관·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“72”를 “74”로 한다.

별표 1의2 중 총계 “1,071”을 “1,073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061”을 “1,063”으로 하며, 행정사무관·전산사무관·시설사무관·농업사무관·환경사무관·공업사무관·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“73”을 “75”로 한다.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의2(기획조정실장) ①·② (생략)	제6조의2(기획조정실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정책기획관은 「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, 제7호의2, 제8호, 제9호 및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제9호, 제12호부터 제17호, 제17호의2부터 제17호의 3 및 -----.
④ ~ ⑧ (생략)	④ ~ ⑧ (현행과 같음)
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.	⑨ ----- ----- --.
1. ~ 10. (생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11.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·추진 및 평가 등 총괄
<신설>	12.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·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1]

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(제20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,070</u>	<u>1,072</u>	+2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1,060</u>	<u>1,062</u>	+2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공업사무 관 · 사서사무관 또는 기 록연구관	<u>72</u>	<u>74</u>	+2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1의2]

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(제20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,071</u>	<u>1,073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1,061</u>	<u>1,063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행정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공업사무 관 · 사서사무관 또는 기 록연구관	<u>73</u>	<u>75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